

경주웰라움더테라스 입주자모집공고

- 경주웰라움더테라스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방지 예방을 위하여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관람 또는 상담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
 - 견본주택에서 실시하는 방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및 기타 견본주택 안내요원의 협조에 불응하는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분양 상담전화(054-745-9990) 및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9.27.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0.13.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위탁자' (주)대경이엔씨와 '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가 2021.8.9일자로 체결한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되는 것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북도 경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북도 경주시)은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써 「주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 (총 공급금액의 10%)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해당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13.) 현재 경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우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우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2 주택 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 요건
 -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 양육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합니다.(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정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우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 가 적용됩니다.(주택형 전용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점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저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저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저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저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우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우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점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우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로 추천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천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경주웰라움더테라스.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합니다.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천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천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천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이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및 심사 (당첨자 검수 및 부적격 소명기간)	계약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일반1순위	일반2순위			
일 정	2021. 10. 25. (월)	2021. 10. 26. (화)	2021. 10. 27. (수)	2021. 11. 02. (화)	2021. 11. 11. (목)~14. (일)	2021. 11. 15. (월)~17. (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특별·일반공급 청약신청자격 서류지참	—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건분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경주웰라움더테라스 건분주택 (경주시 성건동 408-1) *구비서류 등 지참하여 방문	경주 웰라움더테라스 건분주택 (경주시 성건동 408-1) (당첨자 외 입장불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분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9.27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도면 및 마감재 목록표 등은 건분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니, 계약 전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로 인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는 인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표기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계 법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건분주택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경주시청 주택과 - 34742호(2021.10.1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지구 D-5블럭 공동주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 지상10층 5개동 총 23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98세대(일반[기관추천] 19세대, 다자녀가구 20세대, 신혼부부 42세대, 생애최초 13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9월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공급대상 및 면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최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21000773	01	084.9473A	84A	84.9473	27.0699	112.0172	61.5819	173.5991	56.3457	126	12	12	25	8	3	60	66	9
		02	084.6284B	84B	84.6284	28.5841	113.2125	61.3507	174.5632	56.1341	66	6	6	13	4	1	30	36	4
		03	084.8980C	84C	84.8980	25.0518	109.9498	61.5462	171.4960	56.3130	19	1	1	3	1	-	6	13	1
		04	084.6284D	84D	84.6284	28.5841	113.2125	61.3507	174.5632	56.1341	9	-	-	1	-	-	1	8	-
		05	110.6696	110	110.6696	33.0077	143.6773	80.2316	223.9089	73.4073	10	-	1	-	-	-	1	9	1

- ※ 최저층 우선 배정세대(15세대)는 일반분양 총 공급세대(132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호수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상기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해당주택은 테라스가 있는 세대와 테라스가 없는 세대로 구분됩니다.

동별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테라스 있는 세대수	40세대	16세대	39세대	48세대	48세대
테라스 없는 세대수 (1,2층 전세대)	8세대 (1,2층 전세대)	3세대 (1,2층 전세대)	9세대 (1,2층 전세대)	10세대 (1,2층 전세대)	9세대 (1,2층 전세대)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주택형	084.9473A	084.6284B	084.8980C	084.6284D	110.6696
약식표기(타입)	84A	84B	84C	84D	110

*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하였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약식)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종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소계	1회	2회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2021.12.15.	2022.03.15.	2022.06.15.	2022.08.15	2022.10.15	2022.12.15	2023.03.15		
84A	1층	9	67,557,000	329,443,000	-	397,000,000	10,000,000	2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119,100,000
	2층	13	67,557,000	334,443,000	-	402,000,000	10,000,000	3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120,600,000
	3층~5층	39	67,557,000	351,443,000	-	419,000,000	10,000,000	3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125,700,000
	6층~10층	65	67,557,000	357,443,000	-	425,000,000	10,000,000	3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127,500,000
84B	1층	4	67,304,000	334,696,000	-	402,000,000	10,000,000	3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120,600,000
	2층	7	67,304,000	340,696,000	-	408,000,000	10,000,000	3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122,400,000
	3층~5층	21	67,304,000	357,696,000	-	425,000,000	10,000,000	3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127,500,000
	6층~10층	34	67,304,000	363,696,000	-	431,000,000	10,000,000	3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129,300,000
84C	1층	1	67,518,000	320,482,000	-	388,000,000	10,000,000	2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116,400,000
	2층	2	67,518,000	325,482,000	-	393,000,000	10,000,000	2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117,900,000
	3층~5층	6	67,518,000	342,482,000	-	410,000,000	10,000,000	3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123,000,000
	6층~10층	10	67,518,000	347,482,000	-	415,000,000	10,000,000	3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124,500,000
84D	2층	1	67,304,000	340,696,000	-	408,000,000	10,000,000	3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122,400,000
	3층~5층	3	67,304,000	357,696,000	-	425,000,000	10,000,000	3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127,500,000
	6층~10층	5	67,304,000	363,696,000	-	431,000,000	10,000,000	3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129,300,000
110	1층	1	88,014,000	412,714,545	41,271,455	542,000,000	10,000,000	4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162,600,000
	2층	1	88,014,000	419,078,182	41,907,818	549,000,000	10,000,000	4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164,700,000
	3층~5층	3	88,014,000	440,896,364	44,089,636	573,000,000	10,000,000	4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171,900,000
	6층~10층	5	88,014,000	448,169,091	44,816,909	581,000,000	10,000,000	4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174,300,000

- 상기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표의 공급금액에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하였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바랍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적합산 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넷째자리로 산정하였으며, 추후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총별 및 주택형별 등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 이상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표현은 소수점 넷째 자리 제곱미터(㎡)까지 표현되며,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기준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입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아파트의 경우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주택가격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키폭출입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예정임)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납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도금 및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 금액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1,2차 계약금 완납 시 대출 실행 가능)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 무이자 용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 및 계약 해지 등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정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을 통해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은 84A타입이 건립되어 있으며, 그 외 미건립 타입은 견본주택 내 모형 및 사업승인 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84A	84B	84C	84D	110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3	2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2	1	-	-
	중소기업 근로자	3	1	-	-	-
	장애인	3	1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2	6	1	-	1
신혼부부 특별공급		25	13	3	1	-
생애최초 특별공급		8	4	1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1	-	-	-
합 계		60	30	6	1	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86 1141 2128 1321">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경상북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경북남부 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우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우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우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만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경주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우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우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우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우주택자이어야 하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 경상북도 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4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해당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주시)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030,161원~ 7,236,192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8,513,046원	7,393,648원~ 8,872,376원	7,778,024원~ 9,333,628원	8,162,400원~ 9,794,87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393,648원~ 10,351,106원	7,778,024원~ 10,889,232원	8,162,400원~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8,872,377원~ 11,829,835원	9,333,629원~ 12,444,837원	9,794,880원~ 13,059,838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벌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4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 입주자추첨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13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20원~ 13,059,838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로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로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주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태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임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 주택형, (전용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정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정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정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정항목	가정상한	가정구분	점수	가정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기타 유의사항

구분	신청자격
<p>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이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발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p>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2.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3.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음. 4.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p>기타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점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당일 취소 또는 재접수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합니다.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10.25.(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사업주체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021.10.26.(화) 08: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대행은행 창구
	2순위	2021.10.27.(수) 08: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 <p>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p> <p>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p> <p>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각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p>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최저층 우선배정 신청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에 한함)

구분	최저층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아래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 중(최저층) 주택 희망자 ①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만 65세 이상인 자 ②「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세대에 속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입양을 포함)를 둔 분 ※ 경쟁시 ①, ②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배정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로 정해진 청약신청일자에 인터넷 청약하여 신청하고, 자격인증서류 및 최저층(1층)주택 우선 배정 신청(별도 양식)을 제출해야 함. ※ 일반공급 신청자 : 희망자는 인터넷청약시 최저층(1층) 우선배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당첨자 서류제출시 자격인증 서류 및 최저층(1층)주택 우선 배정신청서(별도 양식)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자격인증서류 -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1.11.02.(화)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1.11.15.(월)~2021.11.17.(수) (10:00~16:00) • 장소 경주웰라움더테라스 견본주택(경주시 성건동 408-1) • 계약방문예약 : 당첨자발표일부터 • 계약방문예약 접수 :홈페이지 (www.경주웰라움더테라스.com)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주시 거주신청자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합니다.

	<p>*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p> <p>-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합니다.</p> <p>•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p>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경주웰라온데이터스.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주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11.02(화) ~ 2021.11.12.(금)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11.02.(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예비 입주자)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확인

대상	제출 기간	제출장소
정당 및 예비입주자 전원	2021.11.11.(목) ~ 2021.11.14.(일) (10:00 ~ 16:00)	경주웰라움더테라스 견본주택(경주시 성건동 408-1번지)

-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 진행 불가함)
-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은 취소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상기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이후 부적격 강청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여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으로 청약 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사업주체에서 일괄 파기합니다.
-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기타사항은 아래 내용 중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증 제출 서류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 입주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0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0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0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0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 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0	0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및 피부양 직계존비속	• 청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직계존비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0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4항에 의거, 10년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 	
기관추천 (일반) 특별공급	0	해당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된 추천 대상자에 한하여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신청자격 인정.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또는 인증서, 추천명부로 접수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0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 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0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견본주택 비치)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 로 발급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0	재직증명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인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전원 제출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포함하여 발급.	
0	소득증빙 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 소득입증서류)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 현재 또는 작년 출산 휴가를 받았을 경우 : 출산 전월 휴가급여지급 명세서(월별) 제출.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0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 신고일, 자녀수, 과거1년 근로/사업소득세,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월평균 소득 확인(견본주택 비치)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상세내역 발급)
	0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내역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0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직계존·비속을 소득산정 시 당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1년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주소변동 사항)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0	재직증명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포함하여 발급.
	0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포함하여 발급.
	0	소득증빙서류		• 청약 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 소득입증서류) ※ 아래 소득증빙서류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 해당연도에 소득세 납부 및 1년 기간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함.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 직계존속(3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1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0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 (직계존비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0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 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0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0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당첨사실 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등록 또는 변경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득실 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당일 견본주택 내 접수(현장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고령자, 장애인 등 해당 특별공급 서류를 완비한 공급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대리인 접수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구분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①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①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② 소득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①,②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금년도 신규 사업자	①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또는 예정 신고서(매입,매출 기재된 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②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1)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2)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 1)의 경우 ②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① 견본주택 비치 ② 국세청 홈택스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0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4항에 의거, 10년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3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1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주택 에 대한 소명자료)	0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0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당첨사실 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 사업주체는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Ⅶ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일정	계약장소	문의전화	비고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021.11.15.(월) ~ 2021.11.17.(수) 3일간 10:00~16:00	경주웰라움데테라스 건본주택 (경주시 성건동 408-1번지)	054-745-9990	-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방문 예약 후 해당일 방문 - 당첨자(또는 대리인) 포함 동반 1인까지만 입장 가능 - 코로나19(COVID19) 방역 대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예비입주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할합니다.

※ 당첨자에게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미제출 포함)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계좌 이체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특별공급 포함)	0		계약금	-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및 입금확인서 (건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
	0		자격 검증서류	본인	• 당첨 유형별 자격 검증 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한내 제출한 경우 제외)
		0	추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제3자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0	위임장	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당사 건본주택 비치)
		0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0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청약가점항목(우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우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통장을 타인명으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화와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의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으로 동일 세대내에서 세대원간 동일 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중도금 및 잔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1호 계약자 → ‘1010101홍길동’ / 101동 1901호 계약자 → ‘1011901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MG새마을금고	9002-1973-5682-4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1, 2차 계약금)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관련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에 따라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나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대출신청에 따른 모든 제반비용(인지대 등)은 계약자가 부담)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시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사업주체가 부담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자(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안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선납할인 안내

- 중도금을 약정일 30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간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3년 9월 예정 (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함.)

-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재난지역 선포 등),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재산세 등) 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맘스데이, 주민공동시설, 청소용역휴게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중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지상철,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 등)에 따른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불가시 시행자, 시공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시 시행자 및 시공자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 및 이자 부담 조건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분양자가 책임짐. 정부정책 변경 등에 따라 시행자 및 시공자가 중도금 대출은행 앞선 불가시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계약 시 회차, 일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자(분양, 입주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며 계약자(분양, 입주자)는 이의 없이 승낙하여야 합니다.
- 양도받은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반 보증(부담금대출보증, 사업비대출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분양보증 등)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 총당하고, 더하여 기타 사업정산 후 잔여 액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을 분양받거나 전매할 경우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인지세를 계약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인지세법 제1조, 제3조 및 제8조)
- 본 주택의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체결시 공급금액과 별도로 인지세의 50%를 부담하셔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전매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므로(인지세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전매계약시 양수인과 양도인은 인지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는 “분양가 포함”으로 전세대가 확장형으로 일괄 시공하여 공급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향후 발코니 미확장 요구 및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 금액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등은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면옵션, 특화품목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전자식스위치, 세대/통신단자함, 온도조절기, 스프링클러 등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 (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 및 테라스에 선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테라스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되거나 선풍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면적에 대하여는 서비스 면적이나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계약(유상옵션)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변경사항			구분	84A	84B	84C	84D	110	
	부위	기본	유상옵션							
주방	주방 뒷벽	도기질타일	엔지니어드스톤	금액	3,500,000	2,500,000	2,700,000	2,500,000	2,950,000	
	주방 상판	일반 인조 대리석 (MMA)	엔지니어드스톤	계약금 10% (계약시)	350,000	250,000	270,000	250,000	295,000	
				잔금 90% (입주시)	3,150,000	2,250,000	2,430,000	2,250,000	2,655,000	
	냉장고 장	냉장고, 김치냉장고 수납장	키친핏가구	금액	290,000	320,000	290,000	290,000	290,000	320,000
				계약금 10% (계약시)	29,000	32,000	29,000	29,000	29,000	32,000
				잔금 90% (입주시)	261,000	288,000	261,000	261,000	288,000	
현관중문	3연동 도어	-	알루미늄 지정컬러 분체도장+패턴	금액	890,000	890,000	890,000	890,000	890,000	
				계약금 10%	89,000	89,000	89,000	89,000	89,000	

			유리	(계약시)						
				잔 금90% (입주시)	801,000	801,000	801,000	801,000	801,000	801,000
가구 및 가전기기	천정형 에어컨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금 액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
				계약금10% (계약시)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
				잔 금90% (입주시)	2,250,000	2,250,000	2,250,000	2,250,000	2,250,000	-
		침실2, 침실4	금 액	-	-	-	-	-	2,500,000	
			계약금10% (계약시)	-	-	-	-	-	250,000	
			잔 금90% (입주시)	-	-	-	-	-	2,250,000	
	쿡탑	3구 가스쿡탑	인덕션	금 액	1,690,000	1,690,000	1,690,000	1,690,000	1,690,000	1,690,000
				계약금10% (계약시)	169,000	169,000	169,000	169,000	169,000	169,000
				잔 금90% (입주시)	1,521,000	1,521,000	1,521,000	1,521,000	1,521,000	1,521,000
	쿡탑	3구 가스쿡탑	하이브리드	금 액	680,000	680,000	680,000	680,000	680,000	680,000
				계약금10% (계약시)	68,000	68,000	68,000	68,000	68,000	68,000
				잔 금90% (입주시)	612,000	612,000	612,000	612,000	612,000	612,000
	클린 시스템	-	에어샤워, 에어브러시	금 액	930,000	930,000	930,000	930,000	930,000	930,000
				계약금10% (계약시)	93,000	93,000	93,000	93,000	93,000	93,000
				잔 금90% (입주시)	837,000	837,000	837,000	837,000	837,000	837,000

■ 추가선택품목 계약 금액 납부

공급대금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701-577896	동서건설(주)

- 유상옵션(추가 선택품목)은 사업위탁자 및 사업수탁자와는 무관합니다.
- 유상옵션(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류입금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일에 상기 지정 유상옵션 대금관리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1004호 홍길동 : 1011004 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순: 1020201 홍길순)

■ 추가 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사인 동서건설(주) 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위탁자 및 사업수탁자와 관계없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대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옵션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공사비(부가세포함)는 옵션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가구와 관련된 옵션 선택시와 미선택시 차이에 의한 견본주택과의 공간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선택사항에 따라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

- 기본주택은 84A 주택형(테라스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밖의 주택형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주택 건립타입 외 기본주택 미건립 타입의 내부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기본주택 건립평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기본주택에 시공된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기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기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기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E/V의 인승·속도·탑승위치, 전기차 충전시설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기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단위세대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기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웍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분양가 미포함)
- 기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등)는 기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기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 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기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본 기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기본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비

- 세대에 따라 전/후면 발코니 혹은 실외기실 상부에 전열교환기가 설치되나, 별도의 천장이 설치되지 않아 전열교환기 및 배관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실외기실의 공간이 협소하여 일부 제품의 경우 2단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2단 설치용 가대는 제공되지 않음)
- 난방을 위한 온수 공급은 개별보일러를 이용하여 공급합니다.
- 세대내의 발코니에 도시가스 배관 및 미터기가 설치되며,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일부세대에 신축 엘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천정형에어컨(거실, 침실1), 3구 가스쿡탑, 전기오븐, 음식물 탈수기, 식기세척기, 주방TV, 절수기패달, 비데는 기본공급 품목입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실외기실과 테라스가 마주보게 설치됨으로 해당 세대의 에어컨 가동시 소음 및 열기가 발생합니다.(84B 테라스 B타입)
- 전/후면 발코니의 배수구는 단위세대별 PD의 유무에 따라 배관이 비노출형 또는 노출형으로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는 직배기방식을 적용합니다.(세대간 취기 역류 방지)
- 급수입상배관은 PD 공간을 고려하여 통합배관으로 적용 될 수 있으며, 수도계량기(원격검침용)는 층별 특정위치에 집합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스템은 시공시점의 소방 관련 법령을 기준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스템(펌프, 배관 등)은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통합(경용) 설치 될 수 있습니다.(법적 기준, 소방서 협의 기준)

■ 전기

- 당 기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환기구(급/배기용),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관계법령 및 설계도면 기준에 맞추어 설치됩니다.(본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마감 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기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단자함,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월패드, 주방TV, 욕실스피커폰 등의 전화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세대 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경

- 인허가관청의 인허가 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조경수와 조경시설(어린이놀이터, 휴게 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대지경계선형 등의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수와 조경시설의 위치는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단지 옥외공간의 조화 등에 따라 선형이나 포장과 시설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조경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인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입주인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인에게 있습니다.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테라스

- 본 주택은 건축법상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테라스를 제공하는 주택이며, 테라스는 각층 해당세대가 독립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할 수 있는 공간이나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고 단순 점유하는 공간이므로 계약 전이에 대해 관련 도서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테라스 설치 세대의 테라스 조경은 사업승인시 인허가관청의 인허가 조건사항으로 임의로 변경 불가합니다.**
- 테라스 진출입 시 실내외부의 단 차이 및 빗물침투방지를 위한 창문의 턱에 발이 걸리거나 부주의에 의한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층 테라스는 외부에 노출된 공간으로 인접한 세대 등에 의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배치계획 상 동일 타입이더라도 테라스의 위치, 형태 또는 크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테라스는 본 공사 시 세부 마감 및 디테일 개선에 따라 형태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테라스가 서비스 면적이거나, 입주 후 테라스 사용료로 소정의 금액이 관리비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당세대 일부에 설치된 발코니 확장 외 테라스 공간의 경우 전용공간에 포함되지 않는 조경공간으로 개인의 사적활용 및 구조 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법적책임은 사업주체(위탁사, 수탁사,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설치되는 테라스는 건축법상 조경시설로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입주 후 무단 개조 또는 용도변경 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인 편의를 위하여 공동주택 개별세대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추후 입주인의 안전과 상호 편의 및 민원 방지를 위한 별도의 관리규정이 제정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일부 사용용도에 대한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경주웰라움더테라스 아파트 준공은 **2023년 0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계약(예정)자는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와 주변 도로 사이에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도로에 근접한 모든 동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공원(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및 도로 등은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조성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주웰라움더테라스 사업지 주변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간,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 관계가 없으며, 노선결정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해시설,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항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외와 접한 도로 (북측10m, 남측11m, 동측 13m, 서측 13m)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 부담이므로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니다.
- 단지에 연접한 보도설치 구간 내 공공시설물(상.하수도, 가로등 등)은 경주시의 공공시설물로서 이설요구를 할 수 없고, 시설물의 소유권이 경주시에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본 단지의 동 표시, 동 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입주 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목적물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 체결 이후에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찰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개선 또는 인허가조건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일부 지붕 및 옥탑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 또는 구조물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축벽, 발코니 및 테라스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축벽 문양,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야간조명 효과, 야간 차량 진출입시,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축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외 창부 벽에 입면의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 각 주택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설물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외관, 축벽, 발코니 및 테라스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축벽 문양,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이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 된 최종 사업승인(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휴게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광장 등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등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1층 필로티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D/A(설비 환기구),조경시설물 등이 노출되어 저층 일부 세대의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제한, 소음, 빛 반사, 미관훼손, 냄새, 기타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시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근린생활시설,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집적소, 자전거보관소, D/A(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 등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는 주민의 통행과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하여 견본주택에 비치한 건축도서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차량출입구는 동측 13m 도로에 위치해 있고, 보행자 전용 출입구는 단지 북측 10M 계획도로에 1개소, 서측 13M 계획도로에 1개소 위치해 있습니다.
- 상가 차량 출입구는 동측 13m 도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비상차량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차량조명,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보행 및 비상차량 통행로를 통하여 지하주차장 진입은 불가능하며, 단지 내 도로(보행 및 비상차량 동선) 및 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는 차량 이동시 조명,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는 입주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진입층, 필로티, 물빛광장,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등 오픈 스페이스의 내 외부인에 의한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등) 통행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놀이시설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진입부(동출입구)는 지반레벨 등 여건에 따라 구조형식 및 형태, 크기 등이 서로 상이하니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전기, 통신 인입 시 지중지역은 전기 개폐기 및 통신 맨홀이 설치되어 인입합니다.
- 각 동 진입부 E/V홀 및 복도의 내부 구성 및 평면은 편의성 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부에 어린이놀이터, 물빛광장, 휴게쉼터, 보도 및 비상차로 등이 위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 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의 내부구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커뮤니티센터의 집기는 시공,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 된 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등)은 체육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업으로 신고·운영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기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피트니스센터 등), 경로당, 맘스테이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저수조,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청소용역휴게실 등)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각각의 용도별로 분리되어 있으며, 각 용도별 해당시설 입주민의 공동 시설물입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맘스테이, 경비실#2등은 101동 지하1층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등)은 102동 지하1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1은 105동 지상1층, 경로당은 102동 지상1층에 설치됨으로 인해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실별 배치 및 평면 구성은 편의성 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아파트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추후 건축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세부용도, 층별구성, 입점 업종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환기시스템 및 공조시스템 등으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열기 등에 의한 생활환경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입점 시기는 아파트 입주 시기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101동 하부 및 105동 전면의 지하1층에 각각 위치해 있으며, 저층 일부 세대가 소음, 냄새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동측 지하1층에 총 3대 계획되어 있으며, 진-출입동선은 아파트 차량동선과 같이 사용됨. 아파트 입주민은 주차장을 일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함에 있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 및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주차공간

- 공동주택 주차장은 지하 1층~지하 2층 274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하 1층 3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지하1층 주차장 진입가능 높이는 2.7M이하, 지하2층 주차장 진입가능 높이는 2.6M이하입니다.
- 지하주차장은 단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동별 주차대수, 동 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릅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진입도로에 근접하여 공동주택 차량 진출입구 1개소가 설치되며, 진입도로에 근접되어 있는(101동, 105동) 저층부 세대는 차량조명,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지하 1층 급속충전시설 3기, 완속충전시설 4기, 지하2층에 급속충전시설 2기, 완속충전시설 5기기가 설치예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별 설계 및 유의사항

101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면, 배면에 물빛광장, 어린이놀이터, 단지내 지하주민공동시설 연결 코아(E/V, 계단실)등이 설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 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면, 측면, 배면에 보행자통로 및 비상차로,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
------	--

	<p>을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층에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저층부 세대에는 진동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측 13M, 남측 11M 도로가 인접하고 있어 야간 눈부심 현상,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2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면, 배면, 측면에 물빛광장, 단지내 지하주민공동시설 연결 코아(E/V, 계단실), 분리수거함등이 설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 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면, 측면, 배면에 보행자통로 및 비상차로,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제연 환풍이 설치되어 있어 저층부 세대에는 진동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남측 11m 도로가 인접하고 있어 야간 눈부심 현상,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3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면, 배면에 물빛광장, 등이 설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 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면, 측면, 배면에 보행자통로 및 비상차로,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주민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이 설치되어 있어 저층부 세대에는 진동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남측 11M, 서측 13M 도로가 인접하고 있어 야간 눈부심 현상,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면에 분리수거함, 정면, 배면에 DA, 배면에 Top Light가 설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 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면에 경비실, 옥외E/V,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실외기실, 정면, 측면에 주민운동시설, 배면에 어린이 놀이터가 배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면에 지하주차장 출입구, 보행자 출입구, 비상차로 및 쓰레기분리수거 차량 출입구, 정면, 측면에 근린생활시설주차장 출입구가 배치되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면, 측면, 배면에 보행자통로 및 비상차로,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하부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이 배치되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제연 환풍, 소화주조, 저수조, 펌프실, 기계실이 설치되어 있어 저층부 세대에는 진동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남서측 12M, 남동측 20M 도로가 인접하고 있어 야간 눈부심 현상,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4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면에 물빛광장, 배면에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 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면, 측면, 배면에 보행자통로 및 비상차로,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제연 환풍이 설치되어 있고, 저수조, 펌프실, 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인접되어 있어 저층부 세대에는 진동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측 13M 도로, 북측 10M 도로가 인접하고 있어 야간 눈부심 현상,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5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면에 어린이놀이터,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 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측면에 소공원이 배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면, 측면, 배면에 보행자통로 및 비상차로,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하부 부대복리시설이 배치되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제연 환풍이 설치되어 있어 저층부 세대에는 진동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측 13M 도로, 북측 10M 도로가 인접하고 있어 야간 눈부심 현상,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카탈로그와 견본주택의 CG, 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실공사시 공사여건 및 심의인허가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구조상 동일한 주택형(TYPE)이라도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진행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바랍니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외부창호(유리포함)는 추후 BAR SIZE 및 규격, 색상, 하드웨어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일괄 적용한 설계로 모든 세대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 통일하여 시공하며, 비확장시 상하세대의 단열 및 배관노출 등의 문제가 있어 비확장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110타입은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창호, 실외기실 루버,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건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색상, 열림(개폐)방향, 날개벽체 등의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확장형 세대로 확장부분의 외부창호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어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후면에는 타일 등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아니합니다.
- 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 고정형 가구 하부, 측면 및 후면에는 도배지 마루판 등의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아니합니다.
- 발코니 외벽, 축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의 폭, 깊이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우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우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으며, 욕실장 뒷면은 타일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벽,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건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PL창호의 성능(단열, 결로방지, 기밀성, 내풍압 등) 이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세대의 실외기 루버(배기)가 테라스와의 간섭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테라스는 옥외공간으로 동파 우려로 급수설비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보존 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도시개발사업의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경주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위치한 체비지이며 조합에서 시행하는 기반시설 공사가 늦어질 경우 도시개발사업 준공일자와 아파트 준공일자가 다를 수 있어 아파트 준공과 토지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소수점 이하의 오차 범위 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합니다.
- 당 지역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하여 단지 외 조경 및 도로 시설물 등 주변 현황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계획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지 외 조경시설물 등 주변현황의 경우 현재의 계획을 반영하여 표현하였고 모델하우스 모형 및 분양 카달로그 상에 표현된 것은 참고 이미지이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일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경주시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건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기본형, 확장형 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및 카달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소방법 준수를 위한 소방 설비 및 제연 시설물의 위치 및 개수 등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사양 및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 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시설물, 식재, 포장 등은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에 의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허가 없이 건본주택 내 무단 사진촬영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계약자일 경우라도 허가 없이 촬영할 수 없습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책임 및 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이하에 따라 적용됩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청약 및 계약 전 비치된 건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당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1조 제3항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지정 개시일 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별도통보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3년 9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 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으로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원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기타**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능력	VII-0.239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 XII)으로 표기

■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의무사항 적용 여부)**

※ 주택성능의 표시 「주택법」 제39조(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58조(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의거 본 아파트는 500세대 미만 주택성능등급 표시 미대상 주택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1조의 제3항 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7조 제1항 및 제4항 적용)

의무사항	적용여부	적용사항
건축부문 설계기준(제7조 제3항 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며, 이때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의 단열재설치는 비난방공간과 면하는 난방공간의 외벽을 단열조치 함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치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 분양보증

- 분양보증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21-101-0013400 호	68,701,500,000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을 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사항

- 본 사업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주)대경이엔씨,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에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 한도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하여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주)대경이엔씨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분양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개별 계약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함에 관한 신탁해제나 해지 포함) 등의 사유로 시행위탁자인 (주)대경이엔씨와 시행수탁자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모든 행위 및 권리와 의무는 시행위탁자인 (주)대경이엔씨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시행수탁자(매도인)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매수인(분양계약자)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도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시행위탁자인 (주)대경이엔씨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됩니다.
- 분양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매수인(분양계약자)은 시행수탁자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과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행위탁자인 (주)대경이엔씨 및 시공사인 동서건설(주)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 교체(건축물 브랜드, 명칭 변경 포함) 시 매수인(분양계약자)은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단, 시공사는 시공상 하자에 한정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합니다.)
-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인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신탁업무범위 내에서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현존하는 분양계약에 관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부담하며)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기타 매도인으로써의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인 (주)대경이엔씨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
-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사업비, PF 대출금의 상환(지급), 중도금대출자의 지급(대납)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정보통신·소방 감리
회사명	주식회사 리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세종기술단
감리금액	₩924,332,800(vat 별도)	₩150,000,000(vat 별도)

■ 사업주체 및 사업관계자

구분	사업주체(시행사) 및 사업관계자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호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주)대경이엔씨	동서건설(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65, 8층(신천동, 에스플라자)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중부대로 697
법인등록번호	110111-7125720	171211-0117117	134411-0015750

■ 견본주택 운영

견본주택 위치	관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강변로 236 (성건동 408-1) • 전 화 : 054-745-9990 • 운영시간 : 평일, 주말 10:00 ~ 18:00 • 홈페이지 운영안내 : http://경주웹라운더테라스.com <p>※ 본 견본주택 주차장이 협소해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p>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문의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임)

분양문의	견본주택 : 054-745-9990
------	---------------------